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  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 
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2. 5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96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,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
나. 「지방회계법」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 정비  
(안 제5조)

다.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과 일치하도록 정비(안 제10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,  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기금 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의 연장 사항을 반영하고,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 -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되는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중 ‘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를 ‘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’로 개정하였으며,
  - 안 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를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,
  - 안 제5조제3항에서 「지방회계법」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,
  -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와 일치하도록 안 제10조제1항 중 ‘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’를 ‘회계연도마다’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,
  - 안 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제2항 중 ‘위원장 1명’을

‘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’으로 하여 타 기금과 통일되게 규정하였으며,

- 그 밖에 안 제2조의2제7호, 안 제5조제1항, 안 제6조제5항, 안 제6조의3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내실있는 기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**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**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7.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##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**제10절 지방중소기업의 육성** <신설 2016.3.29.>

제62조의14(기본지침)

제62조의15(육성계획의 수립)

제62조의16(육성계획의 조정)

제62조의17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
- 제62조의18(육성계획의 성과 분석)
- 제62조의19(공장설립 지원)
- 제62조의20(지역협동기술향상)
- 제62조의21(인력개발 및 지역정착)
- 제62조의22(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)
- 제62조의23(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)

**부 칙** <법률 제14111호, 2016.3.29.>

**제3조(다른 법률의 폐지)**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.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  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2. 5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98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」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부칙의 유효기간 연장 (2017년 12월 31일 → 2020년 12월 31일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가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의 일몰규정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

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구세 경감을 지원하고자 부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,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부칙 안 제3조(적용시한)에서 이 조례가 2017. 12. 31.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규정상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감면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, 구세 경감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,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기간의 연장 관련 규정에 의거,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공통적인 적용을 위해 감면 규정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세특례제한법

**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이 법(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)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. <개정 2010.12.27., 2014.1.1., 2014.3.24.>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